안산대학교	전기안전관리규정	규정번호	3-1-18
		제정일자	2018.09.01.
		개정일자	2020.06.01.
		개정차수	1차
		소관부서	행정지원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유지" 란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 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 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5. “일상점검” 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점검” 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밀(연차)점검” 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사 중 점검” 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안전관리의 운영관리 체제

제4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지도 감독)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는 해당부서 팀장이 총괄 관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지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는 시설관리팀이 담당하고 각 건축물에 부착된 전기 콘센트 이하 부하설비의 유지 운영에 관한 업무는 부서별(학과) 담당 관리자 또는 연구 및 실험실습실 담당교수가 관리하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관련 선임 자격소지자로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자의 의무) ① 대학에 시설되는 모든 건축물의 전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행정지원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에 관한 증설 또는 변경이나 전기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부서 팀장을 보좌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의 의무가 있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의 감독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리자”라 한다)를 사전에 지명한다.

② 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3장 전기안전관리교육

제8조(전기안전관리 교육)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사용 운용에 종사하는 교직원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대학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이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내용을 게시하거나 유인물 배포로 대신하거나 매년 실시하는 소방기초훈련(교육)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사항

제9조(공사계획) ①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등의 공사계획을 입안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 매년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설비와 주요한 수리 및 보수공사의 연도별 입안하여 수립하여 해당부서 팀장의 승인을 구하도록 한다.

제10조(공사시설) ①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본교 전체의 업무활동등과 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 대학에서 시행되는 모든 전기공사는 관련법률 및 전기공사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며, 특별한 사항은 전기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 준공 전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기설비의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공사의 내용에 따라 시공업체의 작업책임자를 지정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④ 전기설비공사를 외주 공사로 시행할 경우에는 언제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공 이전에 전기안전관자의 사용 전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을 확보하여 정해진 작업순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장 점검 및 보수

제11조(점검측정)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발전기실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전으로 인한 대학 운영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점검양식은 별표 1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여 별지 제1호에서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그 기록은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 판정이 될 때에는 전기설비를 수리·개조·보수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전기사고 예방

제13조(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발전기실, 기타 고압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재발방지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전기적 요인으로 사고 및 이상상태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업체로 하여금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